돌봄시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 례 집

보건복지부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은 아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하면서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옹호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다짐을 밝힌다.

사명 선언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

행동 강령

하나, 우리는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에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전문인다운 자세를 유지하며, 책임감 있게 실천한다.

실천 수칙

Ⅰ. 아동에 대한 실천

1. 아동 이익 최우선

- 아동을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행정적 · 사법적 · 사회적 ·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개별 욕구 존중

- 아동의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알 권리 및 의사표현 존중

- 아동에게 그들이 받을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 아동에게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사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4. 차별 금지

- 아동의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의 신념, 관습, 문화 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5. 사생활 존중 및 보호

-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단, 아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발달권 보장

- 아동이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아동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Ⅱ. 가족에 대한 실천

1. 가족 지원

-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심리적 · 정서적 · 사회 · 경제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2. 부모 교육

- 보호자에게 아동의 권리, 발달과정,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을 교육한다.

Ⅲ. 사회에 대한 실천

1. 아동 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2. 아동 권리 교육

- 아동은 권리의 주체임과 그 권리 보호는 모든 국민의 책무임을 알린다.
- 아동학대는 생애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임을 교육하여 그것을 예방한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협력체계 구축

- 아동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4. 국가 정책 참여

-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련 정책 입안 과정과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Ⅳ. 전문가로서의 실천

1. 윤리적 책임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2. 전문가적 판단

-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정보 보호

-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따른다.
-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옹호자 역할 수행

- 아동학대 관련인의 의사 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아동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한다.

5. 자기 계발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

Contents

돌봄시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집

04
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개요
- 용어설명
- 아동학대 정의
- 개입절차 안내

09
신체학대

24
정서학대

33
방임

39
성학대

42
아동학대 신고요령

43
아동학대 처벌규정

44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황

※ 사례에 사용된 아동 및 주변인 개인정보는 모두 가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돌봄시설 아동학대란?

용어설명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보육교직원 및 시설종사자(보호자)로부터 발생한 아동학대를 말합니다.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항의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어린이집)'을 의미합니다.
- 어린이집 내라 함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어린이집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야외 현장학습, 통원지도(셔틀버스) 등 외부활동까지가 어린이집 내의 개념으로 포함됩니다.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명시된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를 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내라 함은 공간적인 의미의 시설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보호 및 양육,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 아동복지시설 내의 개념으로 포함됩니다.

보육교직원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의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의미합니다.

시설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항, 제8항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고유 업무에 필요한 직원으로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영양사, 사무원 및 조리원 등을 말합니다.

보호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에 의거하여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의 18세 미만의 자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되는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 행정적 · 사회적 ·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을 때리는 행위만이 학대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제17조)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제3호)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제4호)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
-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6호)

개입절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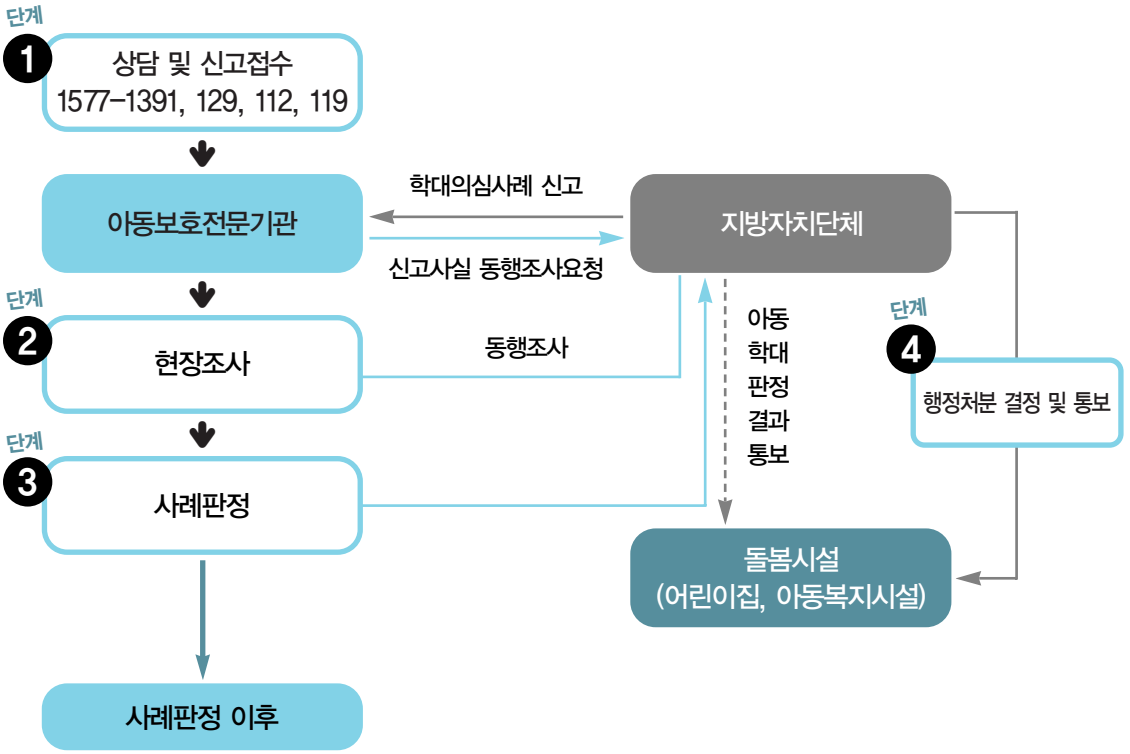
단계
1
상담 및 신고접수
1577-1391, 129, 112, 119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의심사례 신고
신고사실 동행조사요청
지방자치단체
단계
2
현장조사
동행조사
아동
학대
판정
결과
통보
단계
4
행정처분 결정 및 통보
단계
3
사례판정
돌봄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례판정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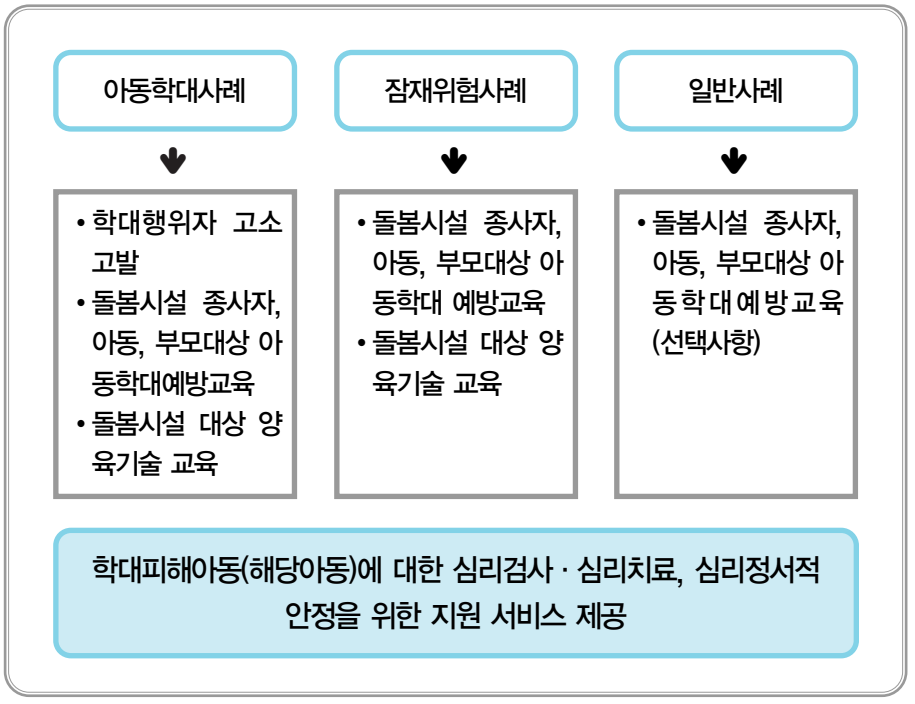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 학대행위자 고소 고발
• 돌봄시설 종사자, 아동, 부모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 돌봄시설 대상 양육기술 교육
• 돌봄시설 종사자, 아동, 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돌봄시설 대상 양육기술 교육
• 돌봄시설 종사자, 아동, 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선택사항)
학대피해아동(해당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 심리치료,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돌봄시설 내 아동학대사례 개입

1 단계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접수

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29(보건복지콜센터), 112(경찰), 119(안전신고센터)를 통해 24시간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내 상호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접수내용 보고 및 현장조사 동행 요청

2 단계 현장조사

신고접수 후, 해당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아동학대 증거자료 확보 : 현장조사 시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증거자료(학대사실 확인서, 증거 사진, CCTV 영상, 현장조사 녹화, 녹취 등)를 보존 및 확보
- 현장조사 과정에 취득한 증거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의 비밀누설금지 등에 의거 당사자에 한한 정보 외에는 제공 금지

돌봄시설 내 아동학대사례 개입

3 단계 사례판정

-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구분하여 사례를 판정하고 각 사례에 따른 적절한 개입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 아동학대사례는 학대의 위험수준에 따라 원가정 보호, 격리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아동복지법 금지행위에 속하는 경우 고소고발을 지원합니다.
- 잠재위험사례 및 일반사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여부가 판정되면, 당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 **아동학대 :** 아동학대 정황이 확증되었을 경우

– **잠재위험 :** 아동학대 혐의가 의심되었을 경우(증거불충분), 업무상 과실에 의한 아동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동학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부적절한 훈육에 해당되는 경우

> **[아동학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부적절한 훈육의 예]**
> 보육교사가 일회성으로 아동에게 '나쁜 짓을 하는 어린이는 경찰이 잡아간대요.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으니 경찰아저씨한테 혼내라고 얘기해야겠다' 라고 하였고 이에 아동이 울음

– **일반사례(판정불가) :**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 단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결정 및 통보

-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아동학대 판정결과, 피해아동 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3조)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에 서면 통보합니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자격취소	시설장 교체
보조금 중단	시설폐쇄
평가인증(참여)취소	사업의 정지
폐쇄조치	

신체학대

신체학대(Physical Abuse) 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학대 행위의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손 · 발 등으로 때리는 행위,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로 때리는 행위, 흉기 및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뜨거운 물,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세게 흔드는 행위, 신체부위를 묶는 행위, 벽에 밀어 부딪히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아동을 던지는 행위,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물에 빠뜨리는 행위 등

신체적 징후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등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입, 입술, 잇몸, 눈, 외음부 상처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대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특정인(또는 보호자), 특정 장소에 대한 두려움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어린이집 _ 신체학대 〉〉

“왜 우리아이 팔을 물은거죠?”

정호(만 3세)가 구내염이 있으니 신경써달라고 원아수첩에 써보냈던 날 오후, 정호 엄마는 “입안이 아프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봤다”는 어린이집 원장의 전화를 받았다. 잠시 후, 하원할 시간이 되어 정호를 데리러 갔더니 원장은 “정호한테 밥을 먹이는데, 자꾸 뱉어내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먹였더니, 정호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순간적으로 제가 정호의 팔을 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와 정호의 팔을 보니, 잇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 조사시, 정호 엄마는 원장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물으니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정호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하자, 원장은 “검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원장은 정호 엄마의 진술과 다르게 말을 했다. “평소에 싫어하는 반찬을 뱉어내는 버릇이 있는 정호의 편식 습관을 바로잡아주려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먹게 했습니다. 뱉어내고 먹이는 과정이 몇 번 되풀이되니까 정호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어요. 머리를 들어올리다가, 제 바로 뒤에 있던 1~2세 영아가 다칠까봐,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정호의 팔에 입이 닿은 거에요. 그냥 입을 댄 것 뿐인데, 정호 어머님께 아이의 팔을 물었다고 표현한 건 제 실수죠”

그러나 보육실습교사는 사건 당시 원장의 뒤에서 1~2세 영아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현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신체학대)로 판정하였으며, 해당 어린이집은 보조금 반환 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원장은 고소고발되었고, 정호는 어린이집을 옮겼다.

“선생님이 귀를 잡아당겼어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민정이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양쪽 귀와 이마, 볼에 상흔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딸의 얼굴을 보고 속상해하고 있던 중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 그리고 ○○○선생님이 민정이의 엄마를 찾아왔다. 찾아온 첫날엔 “민정이가 다른 친구와 놀다가 그랬어요.” 하더니, 다음날 다시 찾아와서는 ○○○선생님이 민정이의 귀를 잡아당겼다고 시인했다.

해당 사례를 신고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 등원 아동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학대행위자인 ○○○선생님은 “점심시간인데 민정이가 밥은 안 먹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 깨라는 의미로 민정이의 양쪽 귀를 접어서 잡아당겼습니다. 겨우 겨우 먹이기 시작했는데, 식사 태도가 계속 좋지 않았어요. 두 숟가락만 더 먹고 그만 먹자고 하며 달래는데도 민정이가 밥을 입에 물고 삼키지 않아서 침이 줄줄 흘러 나왔습니다.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서 다시 양쪽 귀를 접어 당겼습니다.” 라며 총 3번에 걸쳐 귀를 잡아당긴 사실은 시인했지만, 이마는 점심시간 전부터 빨갛게 되어 있었다며 다른 학대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정이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해당 어린이집은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 3개월 정지 및 모니터링 처분을 받았으며, 원장은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되었다. 또한 ○○○선생님은 보육교사 자격취소와 함께 집행유예 2년의 징역이 선고되었다.

어린이집 _ 신체학대 ⟩⟩

“선생님! 진실을 이야기해 주세요”

시청 보육정책팀은 아동학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왔다.

시청 담당자와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어린이집 원장과 아동 부모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에 형준이(2세)는 입으로 친구들과 교사를 물곤 했다고 한다. 그날도 형준이가 보육교사의 허벅지를 물어 멍이 들었는데, 또 친구의 손가락을 물길래 원장이 아동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입술을 ‘톡톡’ 건드렸다는 것. 형준이 엄마는 “형준이의 입술이 두 배로 부어있었는데 살짝 친 정도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며 CCTV를 보여달라”고 하자, 원장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날 형준이를 진료했던 의사는 형준이의 입술이 부어 있었던 것은 기억하고 있으나, 상처가 어느정도 심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단, 의사가 X-선 촬영을 권했으나 보호자가 거부했고, 별도의 처방이나 처치를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사례는 아동학대(신체학대)로 판정되었고,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 시설장 및 대표자 변경 처분을 내렸다.

“숨기지 말고 말해주세요”

시청 홈페이지 신문고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민호(만1세)에 대해 학대의심내용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었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민호(만 1세)가 어린이집에 다닌 지 두 달쯤 되었을 무렵, 등에 전체적으로 멍이 들고 실핏줄이 터진 채로 집에 돌아왔다고 한다.

엄마가 놀라서 어린이집에 확인을 해보니, “모래 놀이터에서 놀던 민호가 뒤로 넘어져 다쳤다”고 했다. 민호의 상흔이 혼자서 놀다가 다쳤다는 어린이집 측의 해명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로 종사하고 있던 민호의 누나는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재차 물으니 “민호가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뒤로 누워버려서 기도가 막힐까봐 등을 두 대 때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민호의 엄마와 누나는 어린이집 원장의 사건 정황에 대한 설명에 일관성이 없고, 은폐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점, 민호 등에 난 상흔을 봤을 때 수차례 아동을 때린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적 대응과 어린이집 폐쇄 조치까지 취해지길 원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관할구청 관계공무원 · 피해아동 · 피해아동의 보호자 · 학대행위자 · 아동담당교사와의 상담을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례를 아동학대(신체학대)로 판정했다.

어린이집은 폐쇄되었고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어린이집 _ 신체 · 정서학대 〉〉

“CCTV를 보여주세요”

“선생님이 머리를 때렸어.” “자로 손바닥을 때리고 발로 찼어.” “점심 늦게 먹는다고 나 혼자 두고 선생님이 친구들만 데리고 바깥놀이를 갔다 왔어.”….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산새소리반 아이들은 심심치않게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러 아이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자 엄마들이 해당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함께 CCTV를 확인했고, 영상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장면들이 확인되었다. 어린이집 원장은 현장조사과정에서 학대행위를 한 교사가 평소 보육태도가 거친 편이긴 하지만, 아동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은 없으며, 아동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항의전화가 있어 교사들에게 주의를 준적은 있다고 했다.

주임교사는 “아동이 차량에서 내릴 때 손을 잡아끌거나, 소풍 가서 이동을 할 때 아동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서 주의를 준 경우는 있지만, 평소 산새소리반 선생님은 아동들과 스킨십이 많고 잘해요.”라고 말했다. 산새소리반 13명의 아동과 학부모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의 아동에게서 학대사실이 확인되었다.

CCTV에서도 교사가 아동들에게 완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뛰어오는 동민이(6세)의 가슴을 밀치는 장면이 2회 관찰되었고, 식사중인 수연이(6세)에게 상체가 뒤로 밀릴 정도로 책상을 밀치는 장면이 관찰되었다. 은혁이(6세)의 산만한 행동을 바로 잡는다며 2회에 걸쳐 40여 분간 타임아웃을 시행하기도 했는데, 이는 아동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감이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모든 정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신체 및 정서)로 판정하였다. 학대행위자인 교사는 해임되었고, 해당 어린이집에는 벌금과 3개월간의 보조금 지급 중지 처벌이 내려졌다. 피해아동들은 어린이집을 퇴원했다.

“선생님, 장롱 안은 너무 무서워요”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장롱이나 화장실에 감금시키거나 잦은 체벌로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장조사과정에서 현직 교사와 퇴직 교사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원장님이 우는 혜은이(2세)를 장롱 속에 가두었다가 한참만에 데리고 나왔는데, 혜은이의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주일에 두 세 번은 있는 것 같아요.” “원장이 현철(3세)이의 뺨을 때려서 얼굴에 손자국이 생겼고, 아현이(1세)의 머리를 벽으로 밀친 적도 있어요.” “영아반 아동에게 젖병을 물리고 방치해두어 구토를 유발시키기도 했고, 많이 먹으면 똥을 많이 싸니까 조금씩만 먹이라고 지시하기도 했어요.” “아동을 장롱에 가두거나 체벌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잡을 수 없다고 했어요.”

원장의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이 어린이집은 교사의 이직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처음엔 전 · 현직교사들의 증언 내용을 부인하던 원장은 현장조사가 계속되어지자 학대 행위를 부분적으로 시인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교사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며 이야기가 부풀려진 부분도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해당사례는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신체 및 정서) 사례로 판정되었으며, 해당 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라 어린이집은 폐쇄가 이루어졌다.

어린이집 _ 신체학대 ››

학대 사례 판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진술

"담임교사가 우리 아이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옆 반 선생님이 해줬어요." 경호(만 1세) 엄마의 신고. "저희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며 사과한 담임교사의 진술을 녹취해서 갖고 있어요." 선모(만 2세) 아빠의 신고. 두 명의 신고자가 학대행위자로 지목한 이는 00어린이집의 원장이자, ☆☆반 담임을 맡고 있는 ○○○이다.

경호와 선모에 대한 학대 사실을 검증하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같은 반에 재원 중인 정욱(만 1세)이와 미조(만 1세)에 대해서도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네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학대행위자는 "경호가 미조의 도시락을 뺏으려 하고 물려고 해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 머리에 손을 댄 것인데, 전 △△반 교사가 그걸 보고 머리를 때린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조의 엄마는 "학대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그럴 분이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전 △△반 교사였던 정욱이 엄마는 그 날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원장님이 경호의 멱살을 잡고 끌어 앉히면서 손바닥이 올라가며 때리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원장님이 아이들을 자주 때리고 혼내요."라고 진술했다. 현직 햇살반 담임교사는 2차 현장조사에서는 학대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3차 현장조사 시에는 정욱이 엄마의 증언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덧붙여 ○○○가 유아들의 배변훈련 과정에서 훈육이 아닌 감정적 대응을 한다고 증언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회는 전 △△반 교사의 구체적 정황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현직 □□반 교사의 증언을 토대로 경호에 대해서는 신체학대를, 선모 · 정욱 · 미조에 대해서는 일반사례로 판정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 조치되었고 원장에게는 자격 취소 조치를 취했다.

장애아동에게 가해지는 강압적인 폭력

장애아동의 부모는 늘 불안하다. 한규(만 6세) 엄마는 이웃인 한규 친구의 엄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어린이집에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한규가 밥을 잘 안 먹는다고 장애전담선생님이 소리를 지르고 숟가락을 애 목구멍까지 밀어 넣고 등짝도 때리고 그러더라고…. 이런 말 전하게 돼서 미안한데… 엄마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같이 애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참 나도 마음이 착잡해."

한규 엄마의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피해아동의 부모와 목격자는 신고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지만, 원장과 장애전담교사(학대행위자)는 학대행위를 부인했다. 원장은 학대행위자가 평소에 장애아동을 지도할 때 "먹어요" "씹어요" 같은 경어를 쓰고, 조근조근 이야기하지, 언성을 높이는 경우는 없다며 장애전담교사를 두둔했다.

학대행위자는 "한규는 음식을 입에 넣으면 씹지 않고 볼에만 모아둬요. 그래서 씹을 수 있게 손으로 볼을 잡아준 거예요. 입 밖으로 음식을 자꾸 밀어내니까 숟가락으로 음식물을 안에 넣어준 것뿐이지 억지로 먹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등을 때린 게 아니라, 볼 만지는 걸 싫어하는 한규가 자꾸 몸을 뒤로 젖혀서 앞으로 밀어준 거예요."라며 학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CCTV로 확인한 결과 교사가 아동의 입에 음식이 있는데도 여러 차례 강제로 음식을 더 넣고, 아동의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로 숟가락을 입안으로 밀어 넣는 등의 학대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이 사례를 신체 및 정서학대로 판정하였고, 지자체에서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정지, 담당교사의 해임을 조치했다. 피해아동은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장애인복지관에 다니고 있다.

아동양육시설 _ 신체학대 ››

반항하는 아이, 감정조절 못하는 선생님

"어제 제 친구가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엄청 심하게 맞아서 병원에도 다녀왔어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인 진수(16세)가 생활지도원으로부터 가혹한 신체학대를 받았다는 신고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주변인 조사를 실시했다.

진수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담배를 피우자 ○○○선생님이 주의를 주었는데, 말을 듣지 않자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목을 때렸다고 한다. 넘어지면서 팔을 다쳤고 때리는 것을 막다가 손가락이 부었다는 것이다. 약 2분간 지속된 폭행으로 입술과 코에서 피가 흘러 학대행위자인 ○○○선생님이 진수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입술을 꿰매고 왔다. 귀가 후 또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을 재차 방문했다.

학대행위자는 이러게 말했다. "아침식사가 끝나는 시간쯤에 담배를 피우는 진수를 봤어요. 주의를 주려고 따라오라고 했지만, 진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심하게 욕을 하면서 반항했어요.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진수를 때렸습니다.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진수에게도 미안하고요."

학대행위자는 고소고발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해당 시설에서는 사직했다. 진수는 지속적인 상담을 받고 있다.

지적 능력이 낮은 아동에게 가해진 체벌

아동양육시설의 생활지도원이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 신체 학대를 가했다는 민원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에 접수되었다. 아동복지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요청해 왔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점검을 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지와 개별 면담을 통해 입소아동 7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생활지도원은 명준이(만 10세)의 무릎을 꿇린 채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때려 멍이 들게 했고, 명준이가 무서워하는 큰형들 숙소로 보겠다고 정서적인 위협도 가했다. 피해 아동인 명준이는 보통 아이들에 비해 지적 수준이 낮아 진술 자체의 신뢰성이 높지 않았다.

학대행위자인 생활지도원은 처음에는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민원서류에 기록된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 "명준이가 울기 시작하면 같은 방에 있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려다 보니 명준이에게 체벌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라며 학대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 사직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준이는 치료를 받았고, 해당 시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게 되었으며, 학대행위자는 자발적으로 퇴사했다.

공동생활가정 _ 신체 · 정서학대 ⟩⟩

일상적으로 체벌과 위협이 행해지는 그룹홈

공동생활가정에서 체벌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고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를 해왔다.

기하(만 16세), 재석이(만 16세), 윤철이(만 15세), 진모(만12세), 인성이(만 12세), 동원이(만10세)는 사모님(학대행위자인 시설장의 아내)의 청소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 꿇고 야단을 맞았으며 손으로 뒤통수를 한 대씩 세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이 후 사모님은 아동들에게 "야구방망이로 더 때리겠다."는 위협도 가했다. 진모는 시설장의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맞은 적이 있다.

인성이는 길이 60cm가량의 플라스틱막대기로 머리를 맞은 적이 있으며, 한 달에 한두 번정도는 체벌을 당한다. "짐 싸라.", "퇴소시키겠다."는 협박을 수차례 듣기도 했다. 시설장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졸았다며 드럼스틱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재석이는 공동생활가정 내 컴퓨터에 게임파일을 다운받았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히고 얼굴을 맞아 멍이 들기도 했다. 윤철이는 자기도 맞은 적이 있고, 동생들인 진모, 인성이, 동원이가 맞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한다.

더 나이가 어린 나머지 두 명의 입소아동들은 맞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학대행위자인 시설장은 두 번 정도 아동의 머리를 때린 적이 있고, "퇴소시키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부분 인정했지만, 일상적인 체벌은 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장의 아내는 학대사실을 모두 부정했다. 해당 시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처분을 받았고, 시설장부부와 피해아동들은 상담을 받고 있다.

격분으로 유발된 심한 구타

"입소아동들에게 평소에 욕을 심하게 하고, 자주 폭력을 행사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며칠 전에는 밤에 떠든다고 아동을 엎드려뻗쳐 시키고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경찰봉처럼 생긴 도구로 심하게 때리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두 달에 한번 정도는 발생하는데, 아동이 버티면 쓰러질 때까지 손과 발로 때려요. 이런 정도면 아동학대죠?"

이런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피해아동인 도겸이(만 13세)는 "○○○선생님 팔찌가 예뻐서 제가 빌려갔다가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안 드리고 좀 장난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욕을 하면서 발로 정강이뼈를 차고, 주먹으로 왼쪽 볼을 때렸어요." 라고 말했다.

학대행위자인 생활지도원은 "평소에 도겸이는 장난이 심해요. 그 날도 팔찌를 그냥 안돌려 드리고 자꾸 도망을 다니면서 ○○○사회복지사에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를 주려고 도겸이를 불렀는데, 바로 오지 않고 몇 번이나 부른 뒤에야 왔습니다. 제가 격분을 해서 뺨을 때리고 정강이뼈를 발로 찬 것은 사실입니다. 밤에 소등한 상태에서 야간근무자의 이름을 부르며 희롱하는 일이 잦아 화가 났었는데, 그런 일이 쌓여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며 시인했다.

해당 시설은 경고와 모니터링 처분을 받았고, 학대행위자는 교육을, 피해아동은 치료와 상담을 받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공동생활가정 _ 신체 · 정서학대, 방임 〉〉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시설종사자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장조사를 가보니, 입소아동들이 또래보다 왜소했으며, 입성이 추레하고, 환경이 위생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은경이(만 8세)는 월 2~3회 정도 머리를 쥐어박히거나 꼬집히며, 잘못하면 책상에 머리를 세게 박아야 한다고 진술했다. 은경이의 친오빠인 은학이(만 10세)는 쉬는 시간이 끝나고 늦게 들어왔다고 시설종사자인 ○○○목사가 빗자루를 던졌다고 했다. 지민이(만 14세)는 친구와 싸웠다고 ○○○목사로부터 머리와 몸을 심하게 맞아 귀 옆에서 피가 나기도 했으며, 지민이가 싸울 때 이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진이(만 13세)와 선호(만 15세) 역시 머리를 주먹으로 맞았다.

학대행위자에게 아동들의 청결상태가 불량하였음을 지적하자 이틀에 한 번씩은 목욕을 시키며,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 씻는 것을 도와주는 등 내부 규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시설종사자들이 종종 집을 비워 아동들끼리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 바꾸기를 하는 등 변명을 했다. 체벌에 대해서 역시 의자를 들었다 놓은 적은 있지만, 던지거나 위협을 주려고 하지는 않는다면서, 아동들이 작은 잘못을 했을 때는 3cm로 머리박기, 큰 잘못에는 5cm로 머리박기를 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설은 아동들에 대한 신체 · 정서적 학대와 방임 사례로 판정 되어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자진 폐쇄했고, 피해아동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갔다.

아동양육시설 _ 신체 · 정서학대, 방임 〉〉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게임기로 게임한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렸어요. 그리고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인문계 진학은 못하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원장님이 욕을 하면서 검정고시나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시설에서 나와 버렸어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고입을 앞두고 있는 형진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와달라며 직접 신고를 해왔다.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형진이의 사례를 이동학대로 판정했다.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를 8~9대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뺨을 때린 행위, 자갈밭에서 1시간 이상 엎드려있기, 머리 박기를 시키는 것은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체학대로 판정했다.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 “인문계 고등학교도 못가는 놈은 쓰레기다. 학교에 가지 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집에서 일이나 도와라. 앞으로 고등학교 진학 얘기를 꺼내면 가만 안두겠다.”라며 위협하고, 아동이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간 다음 날 “이제 우리 식구 아니니까 물 먹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씻을 때도 돈을 내라. 집을 다시 나가라.”는 등의 언어가 아동에게 정서적인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정서학대로 판정했다.

또한 거짓말을 했다면서 과도한 벌을 세우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분은 교육적 방임으로 판정했다. 해당 시설은 경고와 모니터링 처분을 받았고, 학대행위자는 교육을, 피해아동은 치료와 상담을 받고 다른 시설로 옮겨갔다.

정서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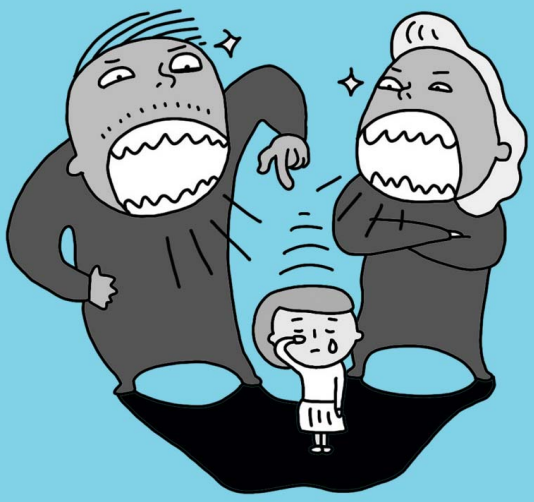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학대가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신체학대, 방임 등 타 학대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학대는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정서학대 행위의 예

- **언어적 폭력행위**
  소리를 지르는 행위, 무시 또는 모욕하는 언어폭력, 원망적 · 거부적 · 적대적 · 경멸적인 언어폭력, 아동을 아기반에 보내버리겠다거나 야외활동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
- **정서적 위협**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보호자(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등) 간 폭력에 노출하는 행위, 내쫓거나 교실 밖에 세워두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거나 억지로 잠을 자도록 하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아동의 발달정도에 적절하지 않는 과도한 과업을 부여하는 행위 등
-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친구 등과 비교 · 차별 · 편애 · 왕따 시키는 행위**

신체적 징후

- 신체발달 저하
- 성장장애, 언어장애
- 원형탈모 등

행동적 징후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우리 아이를 이해해 주세요”

지석이 엄마, 아빠는 지석이(만2세)의 발달 속도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느린 것 같아 걱정이다. 그리고 최근 지석이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석이에게 강압적인 식사지도와 체벌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신고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를 위해 가정 상담을 진행하던 날, 지석이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겨줄 것을 요구하는 표현을 했고, 아빠가 옷과 신발을 벗기려고 하자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장은 지석이의 발달 속도가 느려 보육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석이의 담임교사가 보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석이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석이의 불안 행동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주변인 조사를 실시했다. 그들은 원장이 지석이를 자주 보육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식사 지도를 하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원장이 아동의 발달상황에 대한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압적인 보육 태도를 일관했다는 현장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반환했으며 원장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어린이집을 그만 둔 지석이는 상담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 _ 정서학대 ⟩⟩

“강제로 싫어하는 반찬을 먹였어요”

“어린이집 원장이 1시간 50분 동안 음식을 먹이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뺨을 때려서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그 날이 금요일이라서 주말이 지나고 어린이집에 항의하러 갔더니, 원장님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과를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딸아이의 짐을 챙겨서 데리고 왔습니다.”

다솜이(2세)의 엄마는 흥분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다.

학대행위의심자인 원장은 현장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솜이는 목욕할 때 얼굴에 물이 묻으면 우는 등 성격이 예민한 편이라서 지도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평소 편식이 심해서 담임교사 대신 제가 식사 지도를 종종 해왔어요. 그날도 깻잎을 먹지 않길래 편식예방 차원에서 지도를 한 것인데, 다솜이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제 머리채를 잡아서 엉덩이를 세 차례 손바닥으로 쳤어요. 그렇지만, 뺨은 결코 때리지 않았습니다. 얼마전에 제 실수로 다솜이 몸에 멍이 생겨 제가 사과했지만, 이번에는 다솜이 어머님이 주장하는 대로 뺨을 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언쟁이 오고갔지요.” 주변인들의 진술도 비슷했다.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과 원장(및 주변인)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식사지도 시 강제적으로 진행한 점 등의 내용이 일치함에 따라 아동학대(정서학대)로 판단하였다.

해당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반환하고, 원장은 징역형을 받았으며, 피해아동은 어린이집을 옮겼다.

“선생님, 이불로 덮지 마세요”

어린이집 원장이 만1세의 아동들이 운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빈방에 가둔채 방치하고,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게 이불을 덮어씌운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다.

현장조사 시 주변인들에 따르면 “아이가 울면 달래야 하는데, 달래지 않고 계속 자지러지게 울도록 방치했어요.” “아동이 울면, 다른 아동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고 데려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장님은 우는 아동의 팔을 억지로 잡아끌고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아직 영아인데도 억지로 김치를 먹도록 강요하고, 어리니까 음식을 흘릴 수도 있는데, 원장님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큰소리로 혼냈어요.” “원장님의 방에 한 번 다녀온 아동들은 원장님을 많이 무서워했어요.” 등의 진술이 이루어졌다.

원장은 아동들이 심하게 우는 경우 격리 보호를 할 때가 있지만, 이불을 뒤집어씌우거나 고함을 지른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원장이 아동들에게 행한 일련의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아동학대(정서학대)로 판정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되었다.

어린이집 _ 정서학대 ⟩⟩

정서적 안정감을 앗아가는 보육 환경

"저희 딸이 최근 일주일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몸에 맞은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일주일 전에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딸아이 턱에 멍이 들었고, 그 다음날은 볼에, 또 그 다음날은 턱과 볼 사이에 멍이 든 채 하원을 했더라고요. 어제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잘 걷지를 못해서 보니, 발바닥이 부어 있더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온 이는 다솜(만 1세)이 엄마였다. 다솜이 엄마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CCTV를 보았더니 원장이 다솜이의 뺨을 때리는 것 같은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4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어린이집 원장(학대행위자)는 "턱은 욕조에 부딪혀서 멍이 생겼고, 로션을 발라주었을 뿐인데 볼에 멍이 생긴 이유는 모르겠다."며 학대행위를 부인했다. CCTV 화면만으로는 뺨을 때리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2명의 보육 전문가에게 어린이집 원장이 제공한 1주일간의 CCTV 녹화분 분석을 의뢰했다. 보육 전반에 대해 방임 상태라는 소견이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의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학기 초 적응하지 못하는 하진(만 2세)이를 1~2시간가량 달래주지 않고 방치했으며, 아동들의 기저귀를 공개된 장소에서 갈아주어 아동들로 하여금 정서적 모욕감을 느끼게 했고, 원장과 보육교사 간의 불화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아동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아동들이 낮잠 자는 방에 교사가 부재하거나 시설의 안전 관리에도 소홀한 면들이 지적되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방임 및 정서학대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반환 처분을 받았으며, 피해아동은 어린이집을 퇴원했다.

종교적 신념을 강요한 시설장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이 입소아동들에게 강제로 교회를 다니게 하고 예배 참석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종교적 신념을 강요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해당 시설의 관할구청에서는 입소 아동들을 개별 면담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주었다.

아동들은 과도한 종교 생활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19시~ 21시 30분), 일요일 낮(10시~15시)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하며, 매월 1회 다른 교회와 합동예배를 하는 날에는 자정 무렵에야 끝이 난다. 정기적인 예배 외에도 매일 밤 9시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연합예배나 부흥회가 있는 날에는 더욱 자주 교회에 나가도록 강요받았다.

아동들은 종교 생활로 인해 개인시간을 거의 가질 수 없다며, 조금 줄여 줄 것을 건의해보았으나, 의견은 무시되었고 "이곳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생활을 해야 한다."며 혼내기만 했다고 한다.

입소아동 중에는 종교적 행위를 해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가출했던 아이도 있었고, 시설로부터 강제 퇴소 처리가 된 아동도 있었다고 한다.

해당 시설은 관할구청을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10일간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고, 피해아동들은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장기양육시설로 옮겨갔다.

아동양육시설 _ 정서학대 ››

지적장애아에게 상처를 입히는 선생님

"제가 운다고 선생님이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엄청 더웠어요. 땀이 되게 많이 났어요."

아동양육시설의 선생님이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훈육할 때 33℃ 이상 땡볕에 5~10분간 내쫓아 방치하고, 평소에도 체벌과 폭언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피해아동인 영창이(만 12세)는 그날의 상황을 그렇게만 표현했다.

학대받는 아동이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아이의 신고대로,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지 못했다. 상담원이 추가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평소에 자주 "간나새끼" 등의 욕을 들으며, "죽을래?" 등의 거친 말투로 위협을 받는다는 증언도 첨가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초기 현장조사로 피해아동의 진술을 듣고, 학대 의심정황을 해당 지자체에 알렸다. 그래서 추가 현장조사시 학대행위자인 생활교사는 시청 직원들과 함께 상담을 진행했다.

학대행위자는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날 아이들과 도서관에 가기로 했는데, 시설에 다른 프로그램이 생기는 바람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하니까 영창이가 심하게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 울라고 내보냈죠."

그는 학대 의심상황을 일부 부인했으나, 아동들 훈육에 거친 언행을 사용했음은 시인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시설을 관리 · 감독하는 지자체에 이 사안을 공문으로 알려 적합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시설은 모니터링, 학대행위자는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았고 피해 아동에게는 치료와 상담을 진행했다.

엄마와 아들을 갈라놓는 시설장

규원이(만 7세)의 엄마와 아빠는 모두 지적장애가 있다. 함께 생활하던 시설에서 만나 규원이를 낳았다. 그런데, 규원이의 엄마와 아빠가 지적장애인이라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며 시설장이 아이를 부모에게 내주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나던 시점부터 만 7세가 된 지금까지 시설장이 아동을 데리고 있다.

규원이 엄마가 규원이를 데려가겠다고 시설로 찾아갔는데, 시설장이 여전히 아동을 친모에게 돌려주기를 거부하고 있다.

친권은 규원이 아빠에게 있는데, 그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규원이 엄마는 데려가서 키우겠다 하고, 시설장은 친모가 양육능력이 없다며 돌려주지 않으면서 규원이와 엄마 간의 연락도 단절시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사례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정서학대로 판단하고, 경찰 · 행정기관 · 법률구조공단 · 인권위원회 · 가정법률상담소 등 각종 관련기관에 아동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 방안이 있는지 확인했다.

시설장을 민사 고소할 것인지의 여부 등 최종 선택은 가족의 몫이므로 정보를 안내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피해아동은 법률자문과 별개로 상담을 받고 있다.

아동양육시설 _ 정서학대 ››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서 무서워요

지금은 그곳에서 지내지 않지만, 과거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당시 신체 및 정서학대를 받았다는 퇴소아동의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입소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학대행위자로 지목된 ○○○생활지도원의 학대상황을 증언한 아동은 인호(만 16세), 정철이(만 13세), 규섭이(만 13세), 영환이(만 13세) 네 명이었다.

"○○○선생님은 평소에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대답을 잘 안하고 무시해요. 학교에서 공지사항을 가져와도 컴퓨터만 쳐다보고 앉아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최근에 때린 적은 없지만, 무서운 표정으로 욕하고 소리를 질러요."

"○○○선생님은 만날 소리를 질러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유도 묻지 않고 소리부터 질러요."

"뭘 시킬 때는 손이 아니라 발로 시킬 때가 많고요,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욕을 하고 소리 질러요. 특히 '##새끼' 라는 욕은 입에 달고 살아요. 때리지는 않지만, 때릴 것 같아서 늘 무서워요."

아이들의 이러한 증언들에 대하여 학대행위자는 "제가 전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혈질 적인 성향이 많아요. 아이들에게 욕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항변했다. 학대행위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사했다. 해당 시설은 관할지자체의 행정처분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이 시설의 생활지도원들은 바람직한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전 직원이 참여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는 시설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방임

방임(Neglect) 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 행위의 예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을 혼자 내버려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운 경우, 계절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비적정온도 등)에 방치하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

신체적 징후

- 불규칙적인 식사 또는 잦은 굶주림으로 인한 영양상태 불량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호소

행동적 징후

- 수업 중 조는 태도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 잦은 결석
- 비행 또는 도둑질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어린이집 _ 방임 ››

“몸이 간지러워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아토피를 일으키는 비위생적인 환경, 무엇이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원장, 아이를 맡기고 장기간 찾아오지 않는 보호자….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 · 원장 · 운전기사 · 현직 보육교사 · 퇴직 보육교사 · 등원 아동 보호자 · 퇴소 아동 보호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조사와 더불어 운영일지 · 보육일지 · 건강진단카드 등 모든 자료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한 포털사이트의 카페에는 자신의 아이가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안 아토피와 원인 불명의 색소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으며, 영양실조로 입원도 했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문제지만, 아동을 맡기고 무관심한 부모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 퇴직 보육교사는 말했다. 사실 등원 아동 30명의 보호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9명 이외에는 결번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아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4시 보육을 받는 5명의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데리고 다니는데, 공통적으로 아토피피부염 · 결막염 · 기관지염을 앓고 있다. 이 5명 중 1명의 보호자는 매일 내원하지만, 나머지 4명은 엄마가 1주~3주에 한 번만 온다고 한다.

24시간 보육을 받는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보건 · 위생적 환경이 미흡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은 아동학대(방임)로 판정되었다. 이 사례의 경우는 어린이집의 적절한 조치 여부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자녀 보호에 대한 태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배가 아파서 누워있었는데,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리고 벽을 보고 서있으라고 했어요.”

시후(만2세)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어린이집에 문의를 했더니,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엄마가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확인해보니, 낮잠시간인 오후 1시경 아동들을 재운 후 교사가 30분 이상 자리를 비운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때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깬 시후가 선생님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자 20분 이상 교실을 돌다가 소변을 지리고 말았다. 이후 귀가시간에 교사는 손으로 민호의 엉덩이를 한 대 때린 후 벽에 세워두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현장조사에서 아이들만 재운 후 자리를 비운 사실에 대해 묻자 담당 교사는 사건 당일 낮잠시간에 시설장의 호출이 있어서 아동들이 잠들었음을 확인한 후 자리를 비웠다고 말하면서 그 날 이외에는 한 번도 아동들만 둔 채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엉덩이 체벌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제가 민호의 엉덩이를 때렸는지 저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CCTV를 보고서야 그랬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각하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현장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신체 및 방임)로 판정하였고,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반환했으며 해당 교사는 해임되었다.

공동생활가정 _ 방임 ⟩⟩

“어른이 없는 시설에서 아이들끼리 지내고 있어요”

환희(9세)는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고, 엄마 외에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오래전부터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고 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아들을 남들처럼 키우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늘 마음이 무거운 환희 엄마는 시간이 나는 대로 환희가 생활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에 들러서 아들을 만나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곳에는, 원장도 상근직원인 원장의 남편도 없었다. 어른이 없는 그 집에서 환희는 선미(15세)와 둘이 지내고 있었다. 원장과 직원이 서울에 가서 시설로 돌아오지 않으니, 선미가 가사 일을 도맡아 하며 환희의 식사까지 챙겨주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시설의 원장과 면담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즉각적인 면담에 불응하였고, 이후 진행된 전화 상담에서는 아동 양육 · 보호에 전혀 잘못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상근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환희와 선미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음은 물론, 환희의 축농증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입소아동에 대한 물리적 · 의료적 방임을 문책하자 이를 전면 부인하며 전화 상담도 거부했다.

시설장과 상근직원의 입소아동에 대한 물리적 · 의료적 방임에 따라 시설은 폐쇄 조치되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가정 방문 후 환희와 선미는 위험요인이 제거된 안전한 가정으로 돌아갔다. 또한 환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지속적인 축농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정 복귀 이후 모니터링 및 아동상담을 진행 중이다.

쓰레기와 곰팡이가 가득한 아동양육시설

"△△△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집에 물이 차있고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와 곰팡이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 아이들이 계속 지내도 괜찮을지 걱정이 되네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온 이는 아동양육시설인 △△△의 자원봉사자였다.

이 곳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시설로, 해당 지자체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던 곳이라고 한다.

현장조사를 나가서 보니, 신고자의 말대로 아동들이 생활하는 곳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위생상태가 불량했다. 시설장은 "이 곳이 반지하라서 그래요. 장마 기간 중에 누수가 되어 이사를 준비하느라 짐을 정리하지 못해서 지저분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라며 항변했다. 이에, 상담원이 "2년 전, ○○시청에서 지도 감독하려고 방문했을 때도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서 경고처분을 받았던데, 그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된 것 아닙니까?" 라고 지적하자, 시설장은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 시설에 입소했던 아동들은 모두 퇴소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원 조치되었으며, 이 시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처분을 받았다.

아동양육시설 _ 방임 ⟩⟩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어요”

너무 지저분한 환경 속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시청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시설에 방문해 보니, 시설의 위생상태가 한 눈에 보기에도 매우 지저분했다. 원장과 생활지도사가 없이 시설에는 입소자들만 있었다.

오랜 시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시설의 위생 상태에 대해서 원장은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시설에 물이 찬 데다가, 이사 계획이 있어서 더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면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치를 받은 이 시설은 관할 지자체의 시정 사항을 이행하고, 현재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했다.

성학대

성학대(Sexual Abuse) 란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합니다.

성학대 행위의 예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의 옷 벗는 모습 또는 아동의 신체를 관찰하는 행위, 나체 및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구강을 추행하는 행위, 성기를 추행하는 행위, 항문을 추행하는 행위, 기타 신체부위를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드라이성교를 하는 행위
- **성교를 삽입하는 행위**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구강성교를 하는 행위, 항문성교를 하는 행위
- **아동에게 언어적으로 성적인 표현 또는 농담을 하는 행위**

신체적 징후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질에 생신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입천장의 손상, 성병 감염 및 임신 등

행동적 징후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수면장애(유뇨증, 유분증),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아동양육시설 _ 성학대 〉〉

추행을 시도한 아동양육시설 담당자

올 해 열입곱살인 화정이는 열다섯살 때부터 3년 동안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가기를 7~8번이나 반복했다. 이제는 정말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가출 후 잠시 머물던 일시보호시설에서 나왔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근무자가 따라와서 성학대를 했다고 한다.

사건이 있던 날 오후 3시경, 화정이는 일시보호시설에서 퇴소 후 짐을 챙겨서 나왔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던 시설종사자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화정이를 따라왔다. 그는 인근의 PC방에 화정이를 데려다 놓고 2~3시간 정도 자리를 비운 후 돌아와서는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했다.

자신의 집으로 화정이를 데려간 그는 술과 담배를 권하고, 화정이가 잠들자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며 옷을 벗기려고 했다고 한다. 놀라서 잠에서 깬 화정이는 그를 밀쳐내고 울면서 그곳을 빠져 나왔다.

화정이의 고소고발로 학대행위자는 집행유예 2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화정이는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_ 성학대 〉〉

“센터장님을 혼내 주세요”

은솔이(만 7세)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지 두 달쯤 됐을 무렵, 엄마에게 “센터장님이 내 잠지를 만졌어.”라고 말했다. 엄마는 실수로 스친 정도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더구나 종교인인 센터장이 그랬을 리 없다고 믿었다.

그런데, 얼마 뒤 은솔이를 목욕시키다 보니, 성기 주변이 발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세히 물어보니 은솔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센터장님이 내 잠지를 만졌어. 합체했어. 센터장님을 파리채로 때려줘야 해!”

은솔이 엄마는 학교 보건교사에게 연락하고 은솔이를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았다. 진료 결과는 외상의 징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은 1년 전에도 성추행 문제를 일으켰는데,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전적을 갖고 있다. 은솔이 엄마도 은솔이에게 센터장을 용서해주자고 말했지만, 은솔이는 완강히 “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솔이는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주 1회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은솔이 엄마에게 학대행위자를 고소하라고 설득했다. 혹시 은솔이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까봐 망설이던 은솔이 엄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신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며, 해당 시설은 경고와 모니터링 처분을 받았다.

아동학대 이렇게 신고하세요!

1 단계
아동학대 발견

-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인지하기**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 · 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피해아동 발견 시 위험상황으로부터 빠르게 조치하기**

2 단계
아동학대 신고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아동학대 신고 ☎1577-1391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1577-1391
보건복지콜센터 ☎129
안전신고센터 ☎119
경찰 ☎112

-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의심자 · 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피해아동	학대행위 의심자	신고자
이름 성별 (추정)나이 전화번호 주소 소속 교육기관 학대의심내용 등	이름 성별 (추정)나이 전화번호 주소 피해아동과의 관계 직업/직장 등	이름 전화번호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3 단계
협력 및 지원

-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협조**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아동복지법 제25조 3항)
아동복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됨.

아동학대 이렇게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1조를 통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체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정서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성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제4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71조제1항제1호]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한자(미수범 포함)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방임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기관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전국에 5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2013. 12. 기준).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	서울특별시	02-2040-4242
	서울특별시동부	02-2247-1391
	서울강서	02-3665-5183~5
	서울은평	02-3157-1391
	서울영등포	02-842-0094
	서울성북	02-923-5440
	서울마포	02-422-1391
	서울동남권	02-474-1391
부산	부산광역시	051-242-1391
	부산동부	051-507-1391
대구	대구광역시	053-422-1391~2
	대구광역시남부	053-623-1391
인천	인천광역시	032-434-1391
	인천북부	032-515-1391
	인천광역시미추홀	032-423-1391
광주	광주광역시	062-385-1391~3
대전	대전광역시	042-254-6790~4
울산	울산광역시	052-245-9382
경기	경기도	031-245-2448
	경기북부	031-877-8004
	경기성남	031-758-1385
	경기고양	031-966-1391
	경기부천	032-662-2580
	경기화성	031-297-6587
	경기남양주	031-592-9818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경기	안산시	031-402-0442
	경기용인	031-275-6177
	경기시흥	031-316-1391
강원	강원도	033-244(3)-1391
	강원동부	033-644-1391
	원주시	033-766-1391
충북	충청북도	043-217(6)-1391
	충북북부	043-645-9078
	충북남부	043-731-3686
충남	충청남도	041-578-2655
	충청남도남부	041-734-6640
전북	전라북도	063-283-1391~2
	전라북도서부	063-852-1391
	전라북도동부	063-635-1391~4
전남	전라남도	061-753-5125-8
	전남서부권	061-285-1391
	전남중부권	061-332-1391
경북	경상북도	054-745-1391
	경북안동	054-853-1391
	경북포항	054-284-1391
	경북구미	054-455-1391
경남	경상남도	055-244-1391
	경남서부	055-757-139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064-712-1391~4
	서귀포시	064-732-1391~2

돌봄시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례집

발 행 일 2014년 2월
발 행 인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편 집 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편집위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지원팀
김설희, 유윤미, 이태호, 오세인, 이지미(前사업지원팀 팀장)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558-1391

보건복지부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6길 19 (135-515) Tel 02-558-1391 Fax 02-558-1339 www.korea1391.org